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		
총	무	과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김재우 의원 외 1인

**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(김재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6. . .

발 의 자: 김재우·유승현 의원(2인)

찬 성 자: 김정미·김지식·신용하·이상호
전희정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통리장의 노고에 보답하고, 사기 진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: 통리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신설(안 제6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
- 3)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
- 4)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나. 부서검토: 총무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임수수행능력”을 “임무수행 능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안정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기진작 등) 시장은 통·리장이 읍·면·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6조(사기진작 등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임수수행능력</u>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으로 선진지 비교 견학 및 교육훈련·연수 등	2. <u>임무수행 능력</u>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<u>안정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</u>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-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- ③ 읍장·면장·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·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□ 「공직선거법」

-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 이 법에서 “기부행위”라 함은 당해 선

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직무상의 행위

가. (생략)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

다. ~ 차. (생략)

5. ~ 6. (생략)

③ ~ ⑤ (생략)

□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) ① 누구든지 출산, 양육, 실업, 노령, 장애, 질병,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·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,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~ 20.

21.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

22. ~ 26. 「우편법」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

③ (생략)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총무과

조 례 명	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☐ 검토 사항 ○ 근거 법령 ▪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 ▪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☐ 주요 사항 ○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(안 제6조제4호) ☐ 검토 결과 ○ 「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」 개정을 통해 통·리장 건강검진비 지원의 근거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○ 다만, 통·리장은 현재 수당, 단체보험, 국내·외 연수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건강검진과의 중복성, 타 단체와의 형평성, 주민 공감대,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○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추진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☐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 ○ 기대효과: 통·리장 처우 개선을 통해 신규 인력 확보와 지역 행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○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첨부 ○ 문 제 점: 매년 지속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따라 유사 단체의 추가 지원 요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	

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안 제6조제4호에 규정한 건강검진비의 지출(세출)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이통장 1인당 30만 원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를 지원
- 1년 이상 근무한 이통장을 대상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제 시행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 천원)

구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535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	-	-
도 비	-	-	-	-	-	-
시 비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535,500
민 간	-	-	-	-	-	-
기 타	-	-	-	-	-	-
합 계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107,100	535,500

5. 부대의견: 의견없음

6. 작성자: 총무과 자치행정팀 박재연(☎054-480-6766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이통장 건강검진비 지원: 107,100천 원

- 예산편성: 총무과
- 산출기초: 300천 원 $\times$ 714명 $\times$ 1/2 = 107,100천 원